

소규모합병 공고

주식회사 넥센(이하 "당사"라 함)은 2017 년 8 월 31 일 넥센엘엔씨 주식회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, 상법 제 527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합병방법 : 주식회사 넥센이 넥센엘엔씨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주식회사 넥센 : 넥센엘엔씨 주식회사 = 1 : 8.8793666
3. 소멸회사의 현황
 - 가. 상 호 : 넥센엘엔씨 주식회사
 - 나. 본사 소재지 :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596(부곡동)
4. 합병기일 : 2017 년 11 월 01 일
5. 주식회사 넥센과 넥센엘엔씨 주식회사의 합병은 상법 제 527 조의 3 에 의거,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
6. 합병 반대 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- 가. 반대의사표시 절차: 2017년 09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[별첨1]합병반대 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 - 나. 합병반대 의사표시 접수기간: 2017년 09월 13일부터 09월 26일까지
 -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 - 명부주주 : 2017 년 09 월 26 일까지 당사 재경팀에 제출
 - ※ 제출처 :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595
주식회사 넥센 재경팀 담당자 (☎ 055-320-7371, Fax: 055-333-0778)
 - 실질주주 : 2017년 9월 22일까지 (※명부주주보다 2영업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 -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,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 - 마.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,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

2017년 09월 13일

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595

주식회사 넥센

대표이사 강 호 찬 (직인생략)

[별첨 1] 합병반대 의사표시 통지서

합병반대 의사표시 통지서

(주)넥센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(주)넥센과 넥센엘엔씨(주)의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번호		주주명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수	

2017년 9월 일

성명:

주민등록번호:

주소: